

제3강 무역상품 운송수단의 국경출입

Welcome to
Korea Customs service



<주요 강의내용>

1. 무역상품 운송수단의 종류
2. 개 항
3. 통관역과 통관장
4. 외국무역선(기)의 입항절차
5. 외국무역선(기)의 출항절차
6.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
7. 물품의 하역(荷役)
8. 예외적 하역절차
9. 하역된 외국물품의 장치

1. 무역상품 운송수단의 종류

- ◆ 선박(외국무역선 : 외항선) :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
- ◆ 항공기(외국무역기 : 외항기) :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
- 외국무역선(기)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 변경이 가능
- 외국무역선(기)이 아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운항할 경우도 관세법에서는 외국무역선(기)과 동일하게 관리
- 단, 군함 및 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예외
- ◆ 철도차량
- ◆ 기타 차량 : 트럭, 트레일러, 승용차, 이륜자동차 등

2. 개 항

-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입항함이 원칙
- 단,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(불개항)에도 출입 가능
- 개항은 대통령령인 관세법시행령으로 지정(현재 29개)
 - 항구(23개) : 인천항, 부산항, 마산항, 여수항, 목포항, 군산항, 제주항, 목호항, 울산항, 통영항, 삼천포항, 장승포항, 포항항, 장항항, 옥포항, 광양항, 동해항, 평택/당진항, 대산항, 삼척항, 진해항, 완도항, 속초항
 - 공항(6개) : 인천공항, 김포공항, 김해공항, 제주공항, 청주공항, 대구공항

3. 통관역과 통관장

-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.
- 관세통로 : 육접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접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
-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, 통관장은 관세통로와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

4. 외국무역선(기)의 입항절차

- 외국무역선(기)이 입항한 때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.
 -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
 - 여객 명부와 승무원 명부
 - 승무원휴대품 목록
 - 적하목록
- ◆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 이행과 효율적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세관장은 선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여객명부,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. 단,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입항시까지 제출

5. 외국무역선(기)의 출항절차

- 외국무역선(기)이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당해 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고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**간이입출항 절차** : 외국무역선(기)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,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가 대상
 - 세관장은 적하목록, 선(기)용품의 목록, 여객명부, 승무원명부, 승무원휴대품 목록, 적재물품의 목록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- **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면책** : 입출항 절차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. 이 경우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6.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

-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.
 - 차량용품 목록
 - 여객명부 및 승무원 명부
 - 승무원휴대품목록
 - 적하목록

- ◆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 이행과 효율적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도착 차량이 소속된 회사 또는 그 업무 대행자에게 당해 차량의 여객명부,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7. 물품의 하역(荷役)

- 입항절차가 종료되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무역선(기)에 적재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.
- 단,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항절차가 종료되기 전 일지라도 하역 또는 환적을 할 수 있다.
- ◆ 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(하역통로)와 기간을 제한하기도 한다.
-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외국무역선(기)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,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.

8. 예외적 하역절차

-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-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 자 하는 경우(일시양륙)
 - 당해 운송수단의 여객,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 자 하는 경우
 -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

- 항외하역이나 선(기)용품의 하역, 외국무역선(기)안에서 판매 하는 물품의 하역은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9. 하역된 외국물품의 장치

- 외국무역선(기)에서 하역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.
 - 크기나 무게의 과다,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
 -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
 - 검역물품
 - 압수물품
 - 우편물품
- ◆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지만 역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용
- ◆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 사유로 보세구역외에 장치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보세구역외장치허가)